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힘내라 대구경북 힘내라 대한민국

2020년 4월 24일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원산지관리과 과장 서영주(054-429-4151), 사무관 허재규(4156)/ 제공일: 4월 23일(총 6매)

걱정없이 농사짓고 안심하고 소비하는 나라

배달음식에도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나요?

- 농식품 통신판매, 배달음식 원산지 표시방법 및 확인요령 -

《 주 요 내 용 》

◈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가정식 대체식품(HMR) 소비가 급증하고 있어, 원산지 부정유통 근절 및 소비자 알권리 보호 등을 위해 원산지 표시방법 안내

○ 인터넷·배달앱 등 **통신판매 화면** 및 **배달상품**에도 **원산지 표시**

- 소비자가 구매시점에 원산지를 알 수 있도록 표시

* 포장재에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 전단지, 스티커, 영수증 등 표시 가능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노수현, 이하 '농관원')은 최근 통신판매를 통한 **비(非)대면 가정식 대체식품 소비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통신판매·배달앱**과 더불어 **배달상품** 등에도 **정확히 원산지를 표시해야한다고 강조**하였다.

* 원산지 표시 의무자: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통신판매로 농산물과 그 가공품 및 조리·배달음식을 판매하는 자(업체)

❑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는 **한글로** 하되, **소비자**가 **구매하는 시점**에 **원산지**를 **알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한다.

○ **전자매체**(인터넷, PC통신, 케이블TV, IP, TV, 라디오 등) 또는 **인쇄매체**(신문, 잡지, 카탈로그 등)의 원산지 표시방법은 다음과 같다.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방법>

○ 표시 위치: **제품명 또는 가격표시 주위**

* 전자매체는 특성에 따라 자막 또는 별도의 창을 이용하여 표시 가능

○ 글자색: 제품명 또는 가격표시와 **같은 색**으로 표시

○ 표시 시기(전자매체만 해당): 원산지를 표시해야 할 제품이 **화면**에 **표시되는 시점부터** 표시

○ 글자 크기

– (전자매체) 제품명 또는 가격표시와 **같거나 크게**

– (인쇄매체) **제품명** 또는 **가격표시** 글자 크기의 **1/2 이상**으로 표시하거나 **광고 면적***을 **기준**으로 **표시**

* 광고 면적 3,000㎠ 이상 → 20포인트 이상 / 50㎠ 이상~3,000㎠ 미만 → 12포인트 이상 / 50㎠ 미만 → 8포인트 이상

○ 또한, 통신판매를 통해 판매되는 **농식품** 또는 **배달음식은** 인터넷·배달앱 화면 표시와 별도로 **상품 포장재**에도 반드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 다만, 포장재에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 **전단지, 스티커, 영수증** 등에도 원산지 표시가 가능하다.

*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 957품목(국산농산물 222, 수입농산물과 그 가공품 161, 농산물 가공품 268, 국산수산물 및 원양산 수산물 192, 수입수산물과 그 가공품 또는 반입수산물과 그 가공품 24, 수산물 가공품 66, 음식점 24)

<2019년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위반 현황>

○ 표시 위반업소: 282개소(거짓표시 170, 미표시 112)

* 거짓표시 170개소는 검찰에 송치 / 미표시 112개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3,775만원 부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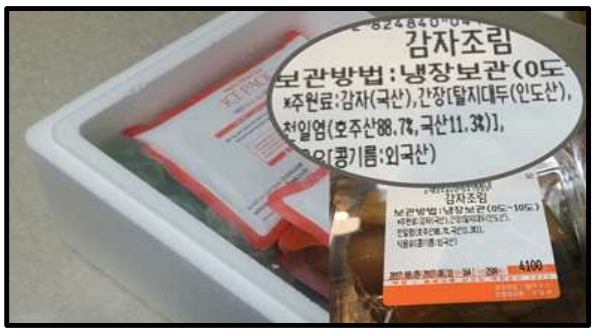
❑ 소비자는 통신판매를 통해 농식품 및 배달음식 등을 **주문할 경우 원산지 표시를 확인**하고, **배송 수령 시**에도 **포장재, 전단지, 스티커, 영수증 등에 원산지가 표시**되어 있는지 꼼꼼히 살펴보아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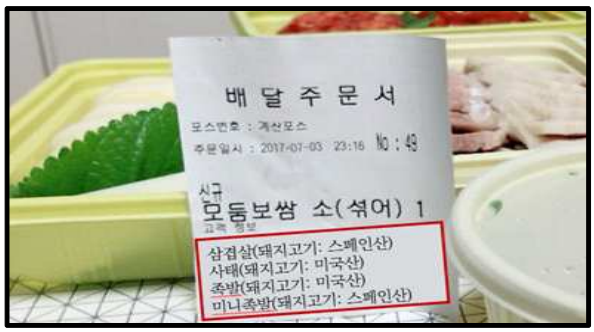
<배달음식 등 주문 시 원산지 표시 확인 방법>





<배달음식 등 배송 수령 시 원산지 표시 확인 방법>





* 식품접객업·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는 자가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전화 주문** 등으로 배달·판매·제공하는 경우에도 **2020.7.1. 이후부터 원산지 의무표시 대상임**

❑ 농관원 서영주 원산지관리과장은 "**통신판매업자 또는 음식점영업자**가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형사처벌 등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원산지 표시를 철저히 관리하기를 당부하면서, **소비자들이** 배달 음식을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원산지 부정유통을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하였다.

○ 아울러, 소비자들도 통신판매 등 농식품을 구입할 때는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될 경우 전화(1588-8112번)** 또는 **농관원 누리집(www.naqs.go.kr)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부정유통 신고자에게는 소정의 포상금(5~1,000만원) 지급

참고 1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방법 및 위반자 처벌사항

www.naqs.go.kr

통신판매할 경우 표시방법

1. 공통 사항

표시문자	한글로 표시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한글 옆에 한문 또는 영문 등으로 추가하여 표시 가능 * 매체 특성상 문자로 표시할 수 없는 경우 "말"로 표시
글자의 위치·크기·색깔	소비자가 혼란을 일으키지 않으면서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표시 * "말"로 표시할 경우는 말의 속도 및 소리의 크기는 제품을 설명하는 것과 같아야 함

2. 판매매체별 표시 방법

규정	전자매체 이용 (인터넷, PC 통신, 케이블 TV, IPTV, TV 등)	인쇄매체 이용 (신문, 잡지 등)
표시위치	**원칙**: 제품명 또는 가격표시 주위에 원산지 표시 **허용**: 제품명 또는 가격표시 주위에 원산지를 표시한 위치를 표시하고 매체의 특성에 따라 자막 또는 별도의 창을 이용하여 원산지 표시 가능	**원칙**: 제품명 또는 가격표시 주위에 원산지 표시 **허용**: 제품명 또는 가격표시 주위에 원산지 표시 위치를 명시하고 그 장소에 표시
표시시기	대상 제품이 화면에 표시되는 시점부터 표시	—
글자크기	제품명 또는 가격표시와 같거나 그보다 크게 * 글자로 표시할 수 없을 경우(라디오 등) 1회당 원산지를 두 번 이상 "말"로 표시	**원칙**: 제품명 또는 가격표시 글자 크기의 1/2 이상 **허용**: 광고 면적 기준 8 ~ 20 포인트 이상
글자색	제품명 또는 가격표시와 같은 색	

위반자 처벌사항!

1. 원산지 거짓표시의 처분 기준

- 형사처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상습위반자: 1년 이상 10년 이하 또는 5000만원 이상 1억 5천만원 이하)
  * 원산지 거짓표시로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거짓표시로 적발된 경우
- 위반업체 공표: 농관원, 농식품부, 시·도, 시·군·구, 한국소비자원, 인터넷 정보 제공 사업자 홈페이지 등에 공표(영업소 명칭, 주소, 위반내용 등)
- 과징금: **위반금액의 5배 이하(최고 3억원 이하)의 과징금**
  * 2년간 2회 이상 원산지 표시기준(거짓표시 등)을 위반한 경우
- 원산지 위반자 의무교육: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제도 교육 이수**
  * 교육 이수명령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2. 원산지 미표시 등 과태료 부과 기준

구분		부과기준
미표시	과태료	5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위반업체 공표	미표시 2회 이상 위반 시(공표 내용은 거짓표시와 동일)
	원산지 위반자 의무교육	미표시 2년 이내 2회 이상 위반시 3개월 이내 원산지 표시제도 교육 이수 * 교육 미이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표시방법 위반		미표시 과태료 금액 1/2
조사 거부·방해		100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원산지 표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www.naqs.go.kr) 하단의
원산지표시종합안내를 클릭한 후 **'원산지 표시 종합 안내 서비스'**에서 확인하세요.

참고 2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방법(법령 발췌)

1. 일반적인 표시방법

가. 표시는 한글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한글 옆에 한문 또는 영문 등으로 추가하여 표시할 수 있다. 다만, 매체 특성상 문자로 표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말로 표시하여야 한다.

나. 원산지를 표시할 때에는 소비자가 혼란을 일으키지 않도록 글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글자의 위치·크기 및 색깔은 쉽게 알아 볼 수 있어야 하고, 말로 표시할 경우에는 말의 속도 및 소리의 크기는 제품을 설명하는 것과 같아야 한다.

다. 원산지가 같은 경우에는 일괄하여 표시할 수 있다. 다만, 제3호나목의 경우에는 일괄하여 표시할 수 없다.

2. 판매 매체에 대한 표시방법

가. 전자매체 이용

1) 글자로 표시할 수 있는 경우(인터넷, PC통신, 케이블TV, IPTV, TV 등)

가) 표시 위치: 제품명 또는 가격표시 주위에 원산지를 표시하거나 제품명 또는 가격표시 주위에 원산지를 표시한 위치를 표시하고 매체의 특성에 따라 자막 또는 별도의 창을 이용하여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다.

나) 표시 시기: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할 제품이 화면에 표시되는 시점부터 원산지를 알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한다.

다) 글자 크기: 제품명 또는 가격표시와 같거나 그보다 커야 한다. 다만, 별도의 창을 이용하여 표시할 경우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에 따른 통신판매업자의 재화 또는 용역정보에 관한 사항과 거래조건에 대한 표시·광고 및 고지의 내용과 방법을 따른다.

라) 글자색: 제품명 또는 가격표시와 같은 색으로 한다.

2) 글자로 표시할 수 없는 경우(라디오 등)

1회당 원산지를 두 번 이상 말로 표시하여야 한다.

나. 인쇄매체 이용(신문, 잡지 등)

1) 표시 위치: 제품명 또는 가격표시 주위에 표시하거나, 제품명 또는 가격표시 주위에 원산지 표시 위치를 명시하고 그 장소에 표시할 수 있다.

2) 글자 크기: 제품명 또는 가격표시 글자 크기의 1/2 이상으로 표시하거나, 광고 면적을 기준으로 별표 1 제2호가목3)의 기준을 준용하여 표시할 수 있다.

3) 글자색: 제품명 또는 가격표시와 같은 색으로 한다.

3. 판매 제공 시의 표시방법

가. 별표 1 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 등의 원산지 표시방법

별표 1 제2호가목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다만, 포장재에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전단지, 스티커 또는 영수증 등에 표시할 수 있다.

나. 별표 2 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방법

별표 2 제2호가목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다만, 포장재에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전단지, 스티커 또는 영수증 등에 표시할 수 있다.

다. 별표 4에 따른 영업소 및 집단급식소의 원산지 표시방법

별표 4 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표시대상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의 원료의 원산지를 포장재에 표시한다. 다만, 포장재에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전단지, 스티커 또는 영수증 등에 표시할 수 있다.